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아 시 아 · 태 평 양 무 역 협 정 원 산 지
확 인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래 관세청 고시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법적 성격이 취약하여 집행상 관세당국과 수출입기업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,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에 대한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0. ~ 9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
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원산지증명서”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참가국의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원산지증명서 발행)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참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산으로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발행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원산지증명서”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참가국의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<u><신설></u>	제10조(원산지증명서 발행)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참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산으로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발행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51